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
------	----

제출연월일 : 2006. 11. 10.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인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 대상자 및 소외계층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표1)

- (1) 중학교 배정수수료 : 1통 300원 삭제
- (2) 교육비 납입 증명 : 1통 300원 삭제

나.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2항)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모부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및 특수
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다.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란을 일부 변경함(안 별표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모·부자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

별표 1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증명수수료란중 교육비 납입 증명란을 삭제한다.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1.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배정 수수료	1건	30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9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정수금액(제2조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령 제17조)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문서·대장등	0열람 - 1건(10매기준) 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원	0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열람 - 1건(10매기준) 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원	0사본(종이 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등	0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0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0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0사본(종이 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0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0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0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0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0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0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0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0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0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 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0시청 - 1컷마다 200원	0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0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0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0사본(출력물 :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0복제 -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 사진필름	0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인화(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0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0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사본(종이 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0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
료 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em;"><u><신 설></u></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모·부자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바동복지법」 제2조, 「특수교육 진흥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p>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중학교배정수수료 2.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1통 1통	300 30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73조, 제88조
4 재증명수수료	3.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라. 교육비납입증명	1건	300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1.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삭제〉	〈삭제〉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9조
4 재증명수수료	3.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단위: 원)		【별표 2】 (단위: 원)	
공개대상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문서 · 대장등	0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0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0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매기준) 1회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0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도면 · 카드등	0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0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0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0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 · 시청		
녹음테이프	0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0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원본의 열람 · 시청
공개대상	전산자료의 열람 · 시청		
녹음테이프	0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0시청 ·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녹화테이프 (비디오)			
영화필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단위: 원)		【별표 2】 (단위: 원)	
공개대상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공개대상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비디오) 영화필름	0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영화필름	0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공개대상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녹화테이프 (비디오)	0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0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공개대상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영화필름		영화필름	
슬라이드	0복제 - 1컷마다 3,000원	슬라이드	0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필름	
사진 · 사진필름	0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0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 사진필름	0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0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단위: 원)		【별표 2】 (단위: 원)	
공개대상	<u>전자자료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u>		
<u>사진 · 사진필름</u>	<p>0사본(종이 출력물) - 1컷마다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p> <p>0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0사본(종이 출력물) - 1컷마다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p> <p>0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28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 (교육보호대상자 등)** ①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제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보호) ②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

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